

□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5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/p>	<p>제3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/p>	<p>법령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7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에 각 처장을 포함함</p>